

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전 주 시 장

- 1. 제 목 : 자동차 운정지 명령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6-8-21 ~ 9-5 (15일간)
- 3. 공고대상

차량번호	소유자	자동차명	등록일	사 유	비고
306나3644	오*근	G80	2026-08-11	소유자 신청	
40더9444	전*죽	EQ900	2026-08-11		

4. 공고내용

- 가.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,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다.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,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라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주시청 차량등록과(063-250-88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